

〈研究 論文〉

CISG상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해석과 판결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Delivery of the Goods,
Handing over of Documents by Buyer and Passing of the Risk under the
CISG

심 중 석**

Shim, Chongseok

〈 目 次 〉

- I. 머리말
- II. 매도인 의무의 총괄
- III.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 IV. 위험의 이전
- V. 요약 및 결론

(논문투고일 : 2012.9.30. / 논문심사일 : 2012.10.14. / 게재확정일 : 2012.10.20.)

국문초록

본고는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2장(매도인의 의무)에 해당하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제31조(물품인도장소), 제32조(운송의 수배), 제33조(인도시기),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그리고 제4장(위험의 이전)의 규정내용을 범위로 하여, 당해 조문내용의 해석과 이에 결부된 판례 또는 판정례의 평가를 통해, 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한 논문이다.

* 본 논문은 2012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조교수, 법학박사·경영학박사

당해 조문내용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30조는 매도인이 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본조는 매도인의 두 가지 주요 의무를 다루고 있는데, 곧 ‘물품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와, ‘물품과 관련되는 서류를 교부해야 하는 의무’가 그것이다. 이하 3개 조항[제31조~제33조]은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를, 제34조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다루고 있다. 곧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되는 조항은 제31조, 제32조, 제33조 등이다. 제34조는 제30조에 명시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과,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내용으로 요약된다. 이하 위험이전에 관한 제4장은 물품의 멸실 또는 손해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내용은 위험이전의 효과 및 운송조항부 계약과 운송 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 그 밖의 경우 등이다.

[주제어]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매도인 의무의 총괄, 운송의 수배, 인도시기,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위험이전

Abstract

Section I of Chapter II(obligations of the seller) in Part III(sale of goods) of the CISG contains provisions elaborating on two of the seller's primary obligations described in article 30 of the CISG, the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relating to the goods. Of the four articles within Section I, the first three articles(31-33) focus on the seller's obligation to deliver the goods and the final article(34) deals with the seller's obligation to hand over documents. The provisions dealing with delivery of the goods contain rules governing the place of delivery(31), the seller's

supplementary delivery obligations where carriage of the goods is involved(32), and the time for delivery(33). Several of the rules within these articles are addressed specifically to delivery by carrier. The Section I provision dealing with handing over of documents(34) addresses the time and place of such handing over, the form of the documents, and curing lack of conformity in the documents. And Chapter IV of Part III of the CISG deals with the passing to the buyer of the risk of loss of or damage to goods. The first article of the chapter(66) states the consequences for the buyer after such risk passes to the buyer. The following three articles(67-69) set out rules for when the risk passes to the buyer.

[Key Words]

CISG, Seller' s Primary Obligation, Carriage of the Goods, Time for Delivery, Handing over of Documents, Passing of the Risk

I. 머리말

국제상사계약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게 되는데, 특히 당사자 자치가 넓게 인정되고 있는 국제상거래에서 당사자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당사자들이 자치적으로 형성한 정형약관에 의하여 달성되고 있음이 통례이다. 그러나, 당해 상거래에 관한 축적된 경험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을 토대로 만든 약관이라고 하더라도, 상거래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을 문제를 일일이 상정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며, 설령 당초에 예견이 가능했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해석에 있어 시간적·공간적 제한으로 인해 상호 간 의견대립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국제사법의 질서하에서는 당해 상거래와 관련이 있는 일방당사자의 국내법에 의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는 당면한 문제해결을 상거

래에 관한 국제사법이 준거법에 의하게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사자는 상호 간의 상거래 관행상 합의로써 특정한 준거법을 계약에 지정하여 이를 국내법에 일임해 둘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상거래가 다변화되어 가는 현시점에서 상대방 국가의 국제사법을 그것도 법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파악하여, 당사자가 의도한 대로 계약내용에 편입하는 일은 매우 번거롭고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국제상사계약을 규율하는 각국의 법률은 서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심지어 국제상사계약에 관한 동일한 내용의 법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들도 그 해석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¹⁾

이러한 상황에서 모름지기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CISG)²⁾은 복잡다단한 국제무역의 적용법으로서의 지위뿐만 아니라 국제물품매매를 규율하는 통일법으로서 그 위상에 걸맞은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여, 그간 국제사법체제하에서 다양한 법적용으로부터 비롯된 법적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하고 있는 차제에 있다. 당해 지위와 역할은 CISG가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가장 성공한 선도적 입법체라고 하는 이견 없는 평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³⁾

이 같은 CISG의 위상과 역할을 배경에 두고, 본고에서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로서 매도인의 의무를 다루고 있는 제3편(물품의 매매) 제2장(매도인의 의무) 제1절(물품의 인도 및 서류교부의 의무)의 유관규정과, 아울러 이에 결부할 수 있는 제4장(위험의 이전)의 규

1) Henry Mather,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Sales Issues Not Resolved by the CISG,”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Jan. 17, 2003, pp.155~208.

2) ‘CISG’는 국제상사법위원회(UNCITRAL)의 공식명칭으로서, 이하 본고에서는 범명 [CISG] 그대로 좇아 사용하고자 한다. 한편, 국문의 경우에는 ‘국제물건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또는 ‘국제동산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 등으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본고에서는 CISG에 대한 계약당사자의 상무적 이해와 그 적용가능성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하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3)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Printed in Austria), 2008, ix-xi.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CISG에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 부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현재 CISG의 체약국은 78개국에 달하고 있다.『www.unilex.info』, ‘Contracting State’, (2012.08.10)

정내용을 중심으로 당해 조문해석과 판결례에 따른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 경우 유관규정은, 매도인 의무의 총괄에 관한 제30조, 물품인도장소에 관한 제31조, 운송의 수배에 관한 제32조, 인도시기에 관한 제33조, 운송서류의 교부에 관한 제34조 및 위험이전의 효과로서 제66조, 운송조항부 계약과 위험이전에 관한 제67조, 운송중인 물품의 위험이전시기를 다루고 있는 제68조, 그 밖의 위험에 관한 제69조 등이다. 이상의 구성체계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를 대칭적으로 편제하고 있는 CISG의 편제를 다름없이 반영한 결과이다.⁴⁾

II. 매도인 의무의 총괄

1. 매도인 의무 일반(제30조)

제30조는 매도인이 의무로 이행하여야 할 기본적인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매도인은 계약과 CISG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물품에 관련된 서류를 교부하며 또한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매도인은 계약에 규정되는 추가의무 또는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에 관한 제9조에 따라, 당사자 간에 이미 확립된 관례 또는 관습에 따른 책임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조에 따라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다. CISG가 적용되는 계약당사자는, 예컨대, 인코텀즈 중의 어느 조건을 채택함으로써 물

4) 본고의 논제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다음과 같다. 우선, 김병학 외(2006)는 위험이전에 관하여 CISG, 인코텀즈, 영국 물품매매법상의 주요 규정 내지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고 있고, 전순환(2012)은 무역관습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고 있으며, 양석원(2009)은 매수인에 대한 위험이전상의 문제점 및 논점을 중심으로 우리 민법과 CISG를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윤남순(2008)은 위험의 본질적인 특질과 내용에 관하여 서류의 멸실, 법적·경제적, 계약상 및 물품자체의 위험으로 특정하여 이를 CISG상의 위험이전에 병합하여 통섭적으로 다루고 있다. 본고는 이에 매도인의 물품인도 및 서류교부의무를 병합하여, 선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쟁점별 유의점 내지 시사점에 그치지 아니하고 연구범위에 해당하는 판결례(이하 본고에서는 판결례를 판례와 판정례를 합쳐하여 새긴다)를 이에 결부하여 실무적용상 유의점 제시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

품을 인도하는 책임을 명시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당해 조건은 CISG에 우선하여 적용된다.⁵⁾ 또한, 매도인은 물품과 관련된 서류를 교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본조의 해석상 매도인 그 자신이 이러한 서류를 발급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님을 유의하여야 한다.

CISG는 적용사항과 비적용사항에 관한 제4조 (b)에 따라 계약이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본조상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여야 할 가장 중요한 의무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 하는 것이다. 다만, 물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는 CISG에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는 국제사법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에 의해 해결하여야 한다. 곧, 물품의 소유권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CISG의 적용범위에서 배제되어 있는 바, 이는 법원 소재지 국제사법의 원칙에 의해 지정된 법률의 적용범위에 속한다. 그렇지만,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유보의 합의가 있는 경우 또는 당해 소유권의 이전에 관한 유보가 계약위반인지의 여부는 다름없이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조항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은 유의하여야 한다.

CISG에서는 본조 이외에 매도인의 의무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데, 곧 양당사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71조 내지 제88조에서의 제반 책임과,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사자간에 확립된 관례 또는 관습에 따른 의무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당사자의 의사나 관습 및 관행에 의해 또는 신의칙에 기해서도 기타의 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일례로 양당사자의 수출·입 허가에 관한 개별 의무를 예시할 수 있다. 아울러, 이하 제32조 (1)의 탁송통지의무, 제32조 (2)의 운송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무, 제32조 (3)의 보험정보의 제공의무, 제71조 (3)의 이행정지의 통지의무, 제77조의 손해경감의무, 제9조 (4)의 이행장애의 통지의무, 제85조의 목적물 보관의무 등도 기타의 의무에 해당한다.

5) Peter Huber, Alastair Mullis,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pp.106~107.

2. 판결례와 평가 : 물품소유권의 귀속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당사자 간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매도인의 물품에 관한 품질 및 권원과 관계된 담보책임 면제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제30조에 기한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를 이행할 수 없어도 당해 면책규정에 의해 그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⁶⁾ 매도인[독일]과 매수인[벨라루스]은 중고자동차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내용에는 목적물에 관한 품질 및 권원에 대해 매도인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소위 담보책임 면제규정이 포함되었다.

매수인은 본건 물품수입 후 대금을 지급했지만, 본건 물품은 도난자동차였던 것이 판명되어, 벨라루스의 관할기관에 의해 압류조치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매수인으로부터 통지받은 매도인은 본건 자동차가 관할기관으로부터 반환되는 것을 조건으로 대금을 매수인에게 전액 반환하겠다는 취지를 통지하였지만, 그럼에도 자동차는 반환되지 않았고, 이에 매도인은 물품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지 않았던 바, 이로부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당해 물품대금을 청구하고자 독일 법원에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에서는 본 물품대금, 등록비용 및 상실이익을 배상하도록 판결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본 물품과 관련하여, 계약내용에 비추어, 자신이 품질 및 권원에 대한 담보책임 면제규정을 근거로 제30조에 기하여 자신의 기본적 의무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것에 의해 그 이행이 종결된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당해 판결에 불복하였다.

6) ‘Landgericht Berlin’ (Germany), r88 U 89/02, 2007.03.21. 본건과 유사한 판결례는 다음을 참조할 수 있다(이하 본 문구는 생략한다) 아울러, 판결례의 출처는 UNCITRAL 공식기관지로서 ‘www.unilex.info’에서의 표기를 좇아 이하 그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① ‘Tribunale di Forlì’ (Italy), r2280/2007, 2008.12.11.

② ‘Commercial Court of Donetsk Region’ (Ukraine), r44/69, 2007.04.13.

③ ‘Supreme Court of Poland’, rV CK 293/05, 2005.11.10.

(2) 판결요지

법원은, 독일 국내법에서는 본건 도난품에 대해서는 선의취득이 성립하지 않고, 이에 매도인은 대상물품에 관한 정당한 권원을 취득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매수인 또한 본 물품의 수입에 의해 그 권원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손해배상책임의 면제에 관한 제79조 (1)에 기하여, 본 물품이 도난물품이었던 것과 관련하여, 중고차의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을 구입했지만, 당시 자동차등록증도 함께 인도되어 이점에 관해서는 그 어떤 의문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본 사안에 대하여, 법원은 자동차 이력에 관한 차대번호(S/N)는 통상 자동차 엔진룸에 표기되어 있지만, 본 물품은 자동차에 용접되어 덧붙여진 특별한 금속판에 S/N이 표시되어 있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매도인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파악했을 것이며, 이에 본 물품이 도난자동차였던 것을 매도인은 예견해야 했다고 설시하였다.

다른 한편, 법원은 계약내용에 비추어, 담보책임 면제조항에 의해 매도인은 본 물품의 품질 및 권원에 관한 담보책임이 면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특약이 제30조에 기한 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게 이전시키는 매도인의 기본적 의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3) 평가

CISG는 물품의 소유권의 귀속이라고 하는 물권법적 측면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각국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된다. 법원은 독일의 국제사법에 기하여, 본 물품의 소유권 귀속에 관해서는 계약체결 시의 물품소재지의 법률이 적용된다고 하여 이에 준거법을 독일 법으로 정하였고, 나아가 동법 적용으로부터 도난물품에 대한 선의취득은 인정하지 않고, 이에 매도인은 본건 물품에 관한 정당한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본건 소유권 취득을 부정하였다.

아울러,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에 대한 제3자의 클레임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에 의해서 배제되며, 제30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이전시킬 의무는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정하는 것이어서, 본건 면책조항에 의해서도 면책될 수 없다는 본건 법원의 판시는 적절한 결정이었다고 판단된다.

Ⅲ.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1. 물품인도장소(제31조)

(1) 물품인도장소의 요건

본조에서는 매도인이 물품을 다른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 그 인도의무는, 매매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매도인은 당해 물품을 ‘최초 운송인’ (first carrier)에게 인도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계약이 특정한 물품에 관련되어 있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로부터 인출되어질 또는 제조 또는 생산되어질 불특정물에 관련되어 있으며, 또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물품이 특정한 장소에 있었다는 것을 또는 특정한 장소에서 제조 또는 생산될 것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당해 물품을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물품을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 영업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인도할 의무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에서 물품의 운송을 요구하고 있다면,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과정에서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그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러한 송부매매에서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라고 함은, 매도인과 매수인 이외의 독립된 운송인이 당해 물품의 운송을 담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경우 송부매매는 독립된 운송인의 존재를 그 요건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송의 주선만을 업으로 하는, 소위 운송주선인에게 물품을 인도한 것만으로는 그 인도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유의하여야 할 사항은, 운송주선뿐만 아니라 동시에 운송도 겸업하고 있는 운송주선인은 운송인으로 취급하여도 무방하다는 사실이다. 이 외에도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한다는 것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당해 물품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분명하여야 하며, 또한 이 경우 ‘넘겨준다’는 의미는 물품의 점유까지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한다.⁷⁾

계약에서 운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는 것으로 그 인도 의무를 다하게 된다. 이 경우 인도장소는, 당해 물품이 특정물이거나 또는 특정한 재고품, 제조·생산되는 불특정물이어야 함을 조건으로, 당사자 쌍방이 계약체결 시에 그 특정장소나 제조장소를 알고 있었던 때에는,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면 된다. 운송 중의 매매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 밖의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체결 시에 그 자신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면 된다. 결국, 최종 인도장소는 매도인 영업소가 되므로, CISG에서 물품의 인도 의무는 추심채무의 원칙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판결례와 평가

(가) 물품의 계약적합성과 재판관할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매도인이 인도한 물품의 계약적합성에 관한 재판관할의 인정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⁸⁾ 매도인[독일]과 매수인[스위스]은 계약

7) Peter Huber, Alastair Mullis, *op. cit.*, pp.112~115.

8)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Switzerland), r4A 131/2009, 2009.06.26.

①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r2 Ob 221 / 98h, 1998.09.10.

② ‘Hof van Beroep, Antwerpen’ (Belgium), rA.R. 2006/AR/384, 2007.01.22.

③ ‘Højesteret (Supreme Court)’ (Denmark), r569/1997, 2001.02.15.

④ ‘Court d’Appel de Versailles’ (France), rUnknown, 2002.11.28.

의 목적물을 매수인의 창고에 인도하였지만, 매수인은 물품의 품질에 부적합이 있다고 하여 매도인에게 물품대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그렇지만, 매도인은 물품대금의 반환을 거절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본건에 대해서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매수인은 당해 판결에 불복하고 상급법원에 항소하였고, 이에 당해 상급법원은 재판관할을 인정하고, 본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본건 매매와 관련하여, 인도물품에 품질의 부적합이 있었는지의 다툼에 관해서는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곧, 만약 주된 쟁점이 계약 또는 계약으로부터 야기된 클레임인 경우에 매수인은 채무가 이행된 또는 이행되어야 할 곳의 재판소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평가

제31조는 인도장소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없고, 또한 관습이나 관행도 없는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본조에 의해서 정해지는 인도장소는 채무이행지의 해석과 관련이 있다. 요컨대, 인도하여야 할 장소는 계약상 채무이행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본건 매도인은 매수인의 창고에 물품을 인도한 사실에 기하여 그 채무를 이행하였다고 본다.

(나) 특정장소에서 물품인도의무가 없는 경우

1)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제31조 (a)에서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적용요건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⁹⁾ 매도인[스위스]과 매수

⑤ 'Landgericht Neubrandenburg' (Germany), r10 O 74/04, 2005.08.03.

⑥ 'Corte Suprema di Cassazione, Sez. Un.' (Italy), r21191, 2009.10.05.

⑦ 'Audiencia Provincial de Murcia' (Spain), r313/2001, 2001.06.18.

9)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Swiss), rHG 970238.1, 1999.02.10.

인[이탈리아]은 종이박스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도인이 본건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였으나, 매수인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매도인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물품대금 및 그 이자를 청구하였다. 사실관계로서, 양당사자 간에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였고, 그간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매도인이 물품을 운송인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은 당해 물품대금을 일부 선납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그러나, 본 다툼에 기하여, 매수인은 그간에 인도된 물품과 관련하여, 그 자신은 모든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는데, 다툼이 된 물품은 아직 인도되지 않았다는 것이 매수인 주장의 핵심이었다. 이에 덧붙여 매수인은 물품이 이미 운송인에게 인도되었더라도 이를 거절할 것이며, 매도인과 그간의 기록을 상호 간에 확인하여 쌍방의 이행과정을 확인하겠다고 하였다.

매수인의 주장에 기하여, 물품인도와 관련해서, 누가 자신을 대신하여 물품을 수령하는지를 확정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매도인은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이 당해 물품을 수령하였다고 항변하면서, 매수인의 주장을 부인하였다. 아울러, 매도인은 물품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인도되는 때에, 매수인이 이를 확인하고 날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관련된 계산서에도 관계기관의 확인이 첨부되어 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매도인은 매수인이 정히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로서, 매수인의 날인증서를 제시하였다. 곧, 선적을 위한 운송대리인의 물품수령 확인서류 및 선하증권 등이 그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본건에 대한 반증과 또한 물품수령 및 물품대금의 선납 등에 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2) 판결요지

법원은, 매도인이 특정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할 의무가 없는 경우 인도의무는 매매계약에 운송을 포함하는 경우에 매수인에게 송부하기 위하여 물품을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는 제31조 (a)를 원용하여, 매도인의 주장을 인정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당해 판결에 불복하고 상소를 제기하였으나, 상소법원은 매수인의 상소를 하급심에서와 마찬가지로 다름없이 기각하였다.

3) 평가

참고로, 계약에서 운송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두는 것으로 자신의 인도의무를 다하게 된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인도될 특정장소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두면 된다. 운송 중 매매도 이와 다름이 없다.

2. 운송수배(제32조)

(1) 운송수배의 요건

운송계약이 수반되는 계약에 있어서, 제32조는 제31조에 규정된 내용 이외의 매도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제32조는, 매도인이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였으나, 물품의 화인, 선적서류 또는 그 밖의 방식에 의하여 계약물품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당해 물품을 명세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것, 매도인이 운송을 수배할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 비록 매도인이 물품운송과 관련하여 보험에 부보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보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매수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는 것 등의 내용을 정하고 있다.

한편, 본조 (2)에 의하면, 물품운송을 수배할 의무가 있는 매도인은 통상의 조건으로 적절한 운송수단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양 당사자의 계약내용에는 매도인이 어떠한 특정한 운송수단을 사용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에, 이 경우 매수인은 특정한 운송수단으로 당해 물품을 운송하기로 합의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¹⁰⁾

그럼에도 매수인이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매도인은 당해 운송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된다. 곧, 본조의 적용상 되짚어 두

10) Franco Ferrari, "Burden of Proof under the CISG,"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Nov. 5, 2005, pp.1~8.

어야 할 사항은, 양당사자들이 본조의 규정내용을 변경하였다는 사실 또는 본조에 구속되지 않겠다는 것에 관한 합의가 존재하였다는 사실 등을 주장하는 일방당사자는 당해 합의에 관한 입증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¹¹⁾

(2) 판결례와 평가 : 운송계약의 체결과 조건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운송의 수배에 관한 제32조 (2)의 적용요건을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¹²⁾ 매수인[오스트리아]은 리히텐슈타인의 스위스 지점으로서 매도인과 주류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납입처는 러시아였지만 운송방법에 관해서는 매수인이 트럭에 의한 일관운송을 주장한 것에 대해, 매도인은 트럭과 열차에 의한 복합운송을 주장하여 당사자 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매수인은 합의된 결제수단인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았기에 매도인은 물품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물품대금으로 기지급한 선금의 반환 및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스위스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나) 판결요지

법원은, CISG는 입증책임에 관한 규정을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건 계약의 준거법인 스위스 국내법에 따라, 물품의 트럭 일관운송에 관하여 당사자 간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매수인은 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이를 증명할 수 없었

11) Ingerborg Schwenzer and Christiana Fountoulakis,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pp.223~228 ;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 Press, 1998, pp.252~260.

12) 'Handelsgericht Zürich' (Switzerland), 'HG 930634', 1998.11.30.

①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Spain), 'JUR 2002\114334', 2002.02.12.

② 'Bezirksgericht der Saane' (Switzerland), 'T.171/95', 1997.02.20.

기 때문에 제32조 (2)에 의거, 운송수단에 관해서는 매도인이 결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매수인이 신용장을 개설하지 않은 것과 관련,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매도인은 추가기간을 부여하여 매수인에게 그 의무이행을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다) 평가

운송수단의 선택은 당해 비용이나 운송기간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당사자는 신중하게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본건에서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합의가 결여된 채로 물품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통상적으로, 매도인의 주장과 같이 유럽에서 트럭에 의한 직송의 경우는 철도와의 복합운송에 비해 그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상례라 할 때, 매도인으로서 정해진 가격이라면 통상의 철도와 트럭의 복합운송에 의할 것이고, 또 그것이 대상물품의 일반적인 운송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사자 간에 운송수단에 있어 특별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제32조 (2)에 기하여 매도인이 운송방법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이 상황에 따라 적절할 것과 당해 운송을 위한 통상적인 수단에 의한 것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본건은 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판결례라고 하는 점에서 그 의의를 구할 수 있다.

3. 인도시기(제33조)

(1) 인도시기의 요건

제33조는 물품의 인도시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곧, 본조에서 물품의 인도시기는 차례로, 당사자의 의사 및 인도의 시기가 계약에 의하여 기간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그리고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reasonable time) 내에 인도하면 된다. 한편, 매도인이 이상의 시기를 경과하게 되면, 즉시 인도 의무의 위반으로

취급되며, 이에 매수인은 제45조에 의거 별단의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본조에 의할 경우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해 명시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확정된 일자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한편, 계약에 의해 지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는 인도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기간 내에 인도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특정한 날을 선택해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예컨대,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운송을 주선하기로 되어 있거나, 또는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 인도하기로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기간 내에 매수인의 선택이 없다면, 그 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매도인은 스스로 인도할 필요가 없고, 또한 인도하여서도 안 될 것이다. 이 경우는 다름없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해당한다.¹³⁾

이상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계약체결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매도인은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의 산정 내지 확정은 당해 상황의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사실의 문제로 귀결된다.

(2) 판결례와 평가 : 상당한 인도기간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제33조 (c)에서의 상당한 인도기간의 결정에 관한 사례이다.¹⁴⁾ 원고는 독일의 자동차 판매상이고, 피고는 덴마크에 영업소를 가지는 도매상이다. 피고는 원고에게 자동차 1대를 주문하였다. 계약서에는 지정된 기일 이전에 당해 자동차가 인도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원고는 이를 승낙하였지만, 인도일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 표준약관을

13) Joseph Lookofsky,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s Kluwer, 2008, pp.70~71.

14) 'Oberlandesgericht Naumburg' (Germany), '9 U 146/98', 1999.04.27.

① 'ICC Court of Arbitration' (Paris), '8611/HV/JK', 1997.01.23.

② 'Hof van Beroep, Antwerpen' (Belgium), '2002/AR/2087', 2006.04.24.

③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Spain), 'Unknown', 1997.06.20.

④ 'Tribunal Cantonal de Sion' (Switzerland), 'C1 97 288', 1998.06.29.

⑤ 'District Court for the Colorado' (USA), 'Civil Action No. 09-cv-01763-WYD-KMT', 2010.07.06.

당해 계약서에 추가하였다.

이후 계약에 지정된 기일까지 자동차는 인도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계약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1주일의 기간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당해 추가기간에도 그 어떠한 통지도 없었다. 이에 피고는 계약의 해제를 선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주 뒤에 자동차가 인도되었다. 피고는 물품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원고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판결요지

본 사건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가 제49조에 따라 계약해제를 선언한 것은 타당하고, 나아가 원고가 계약서에 인도날짜의 변경에 관한 표준약관을 추가한 것은, 그 내용이 청약을 변경하는 승낙에 관한 제19조 (2)에서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일부분으로 취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당해 표준약관에는 명시적으로 인도기일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는 제33조 (c)에 의해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하고, 그렇다면 제33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이 인도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피고의 청약에 지정된 날짜가 원고에게 구속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종의 상당한 기간의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가 이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제47조에 따라 추가기간을 지정하여 이를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제반 행위는 제49조에 의거,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는 충분한 사유가 되기에 합당하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다) 평가

본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지정한 1주일의 기간이 상당한 기간에 합당한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이 같이 짧은 기간이 지정되었다면, 응당 피고는 원고에게 당해 상당한 기간의 부적합성을 들어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어야 하고, 나아가 법원에 당해 사실에 대한 부적합을 주장했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7주의 기간 동안에도 오로지 침묵으로 일관하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이는 자신의 주장을 스스

로 포기한 결과로 취급할 수 있을 것이다.

4.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의무(제34조)

(1)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의무의 요건

제34조는 제30조에 명시된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규정이다. 그 내용은,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하며, 매도인이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 매도인은 그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흠결을 보완할 수 있고,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요컨대, 본조는 서류교부의무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것과, 당해 서류가 부적합한 경우에 계약에서 정한 교부 시까지 매도인이 치유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매도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장소·방식에 따라, 물품에 관한 서류를 매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되는 서류에는 선하증권, 창고증권, 화물상환증 이외에도 매수인이 당초 매도인에게 요구한 일체의 서류가 포함된다. 이를테면, 수출·입 허가서, 원산지증명서, 보험서류 등이다. 한편, 서류교부의 시기·장소·방식 등은, 일차로 당사자의 의사나 관습, 관행 등에 근거할 수 있을 것이나, 통상적으로는 인코텀즈에 의하고 있음이 상례이다.

매도인이 서류를 이미 교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당해 서류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는 서류를 교부해야 할 시점까지 매도인은 그 부적합을 치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매도인은 당해 행위로부터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비용을 부담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서류의 부적합에는 당해 서류가 계약내용에 비추어 어긋난 모든 경우를 포함하며, 그 판단은 당해 상황에 따라 사실의 문제로 귀결된다.

매도인이 서류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매수인은 제45조 이하의 모든 구제수단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내용은 손해배상청구권을 위시하여,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권, 인도기일 이후의 보완청구권, 계약해제권, 대금감액청구권, 그리고 물품일부의 불일치와 조기인도 및 수량초과인도에 관한 하자보완 내지 물품수령의 거절 등이다. 한편, 설령 매도인이 서류의 부적합을 교부해야 할 시기까지 당해 서류의 부적합을 치유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수인은 그로부터 발생된 손해배상을 다름없이 청구할 수 있다.¹⁵⁾

(2) 판정례와 평가 :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의 요건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판정례는 매도인의 물품에 관한 서류교부의무와 신의칙 및 중대한 계약위반에 관한 CISG의 규정이 적용된 사례이다.¹⁶⁾ 1998년 4월 매도인[중국]은 매수인[미국]과 공업용 원재료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매수인은 신용장 결제방식을 요구하였다.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후, 매도인은 화환취결에 임했으나, 본건 물품의 하자로 인하여 은행으로부터 대금지급이 거절되었다. 곧, 신용장 문면상 날짜와 선하증권상의 날짜가 서로 달랐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당해 하자를 수용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과, 선하증권의 매입을 요구하였다. 이에 매수인은 날짜의 불일치가 매도인의 귀책사유임을 적시하고, 당해 물품대금의 할인을 요구하였다.

매도인은 이 같은 매수인의 요구를 거절하였는데, 그 이유는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도 않고, 또한 그 대금을 지급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었다. 결국, 매도인은 매수인이 아닌 다른 회사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손실을 입게 되었다.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중재를 신청하여, 매수인에게 제시

15)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07, pp.689~704.

16) 'Intermediate Peoples' Court Economic Chamber' (China), 「102」, 1998.02.15.

한 기타의 요구 이외에, 이로부터의 손실 및 대금지급일 이전까지의 이자를 청구하였다.

(나) 판정요지

본건 중재에서 매수인은, 당해 운송서류는 제34조에 따라 자신에게 인도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을 구성한다. 또한, 매도인은 다른 회사에 전매할 것에 대한 통지를 자신에게 발송하지 않았기에, 이는 일방적인 계약해제가 되어, 이 또한 중대한 계약위반이 된다. 아울러, 선하증권과 신용장상에 날짜가 상이하므로 매수인이 물품을 전매하는 과정에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매수인이 그 할인을 청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요구라고 주장하였다.

중재판정부는, 이 같은 매수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곧, 중재판정부는 서류의 불일치가 반드시 계약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고, 본건에서 다툼이 된 날짜의 불일치는 분명히 인쇄상의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도 매수인은 신의칙에 따라 당해 물품을 수령했어야 했다고 지적하였다.

나아가, 중재판정부는 선하증권에 명기된 날짜의 기재 착오가 물품의 전매에 영향을 미쳤다고는 볼 수 없는 바, 이에 매수인의 물품대금할인 청구는 이유가 없고, 또한 매수인은 상당한 기간 내에 당해 물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그 어떠한 통지도 매도인에게 발송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는 중대한 계약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통지하지 않고 물품을 전매할 권리를 보유한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다) 평가

본 판정례는 제34조에 기하여,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되는 시기와 장소 및 형식에 따라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 매도인이 계약에서 요구된 시기 이전에 서류를 교부한 경우 매도인은 그 시기까지는 서류상의 모든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 다만 이러한 권리의 행사가 매수인에게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비용을 야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점, 그러나 매

수인은 본 협약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보유한다는 당해 규정내용을 다름없이 적용한 판정례로 취급할 수 있다.

IV. 위험의 이전

1. 위험이전의 효과(제66조)

(1) 위험이전효과의 요건과 제한

본조에서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당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더라도 매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한다고 하고, 다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험이전의 효과에 있어, 매도인이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기 전에 매수인에게 당해 위험이 이전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매수인은 당해 물품대금을 다름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책임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곧 본조를 원용하여 만약 위험이 이전한 것을 매도인이 입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멸실 또는 손상된 물품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¹⁷⁾

본조에 기하여,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발생한 멸실 또는 손상의 예외로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 후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는 경우에 매수인은 대금지급의 의무를 면하지 못하지만, 만약 이러한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되면, 본조에 따라 이는 불면책약관의 예외로서 취급된다.¹⁸⁾

17) Ingeborg Schwenzer and Christiana Fountoulakis, *op. cit.*, pp.469~472.

18)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7권 제3호, 2012, 7~8면.

(2) 판결례와 평가 : 운송조건에 관한 합의의 존재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당사자 간에 운송조건에 관한 특별한 합의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준과 요건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¹⁹⁾ 당사자는 유기물을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인도조건은 CIF로 특정하였고, 매수인은 전언통신으로 물품의 특성상 그 온도유지에 주의하여야 한다고 통지하였다.

이후 목적항에서 물품의 하역 시 운송인은 물품의 하자를 발견하고, 즉시 매수인의 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하였다. 그러나, 매수인 고객은 물품수령을 거절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보험자 및 매도인에게 당해 사실을 지체 없이 통지하였다.

목적항의 공인검사기관의 검사결과에 의하면, 목적물은 운송과정 중에 고온에 노출되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수인과 매도인 및 보험자는 협상을 통해, 보험사와 매도인이 연대하여 매수인의 손실을 배상할 것을 합의하였다. 아울러, 매도인은 추가로 매수인에게 일정한 손해배상액 지급을 합의하였다. 그러나, 매도인은 본건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다.

(나) 판결요지

매도인은, 제30조 및 CIF 조건에 따라, 본건 물품손실에 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매도인은 선적 시 온도유지에 관한 사항을 운송인에게 통지하였다고 주장하고, CIF에서 위험이전의 시기는 본선난간임

19) 'CIF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Unknown」, 1995.

①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SA), 「12 Civ. 3904」, 2010.02.10.

②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olmar' (France), 「Unknown」, 1997.12.18.

③ 'Russian Federation Chamber of Commerce' (Russia), 「132/2004」, 2005.10.27.

④ 'Juzgado de Primer Instancia, n. 3 de Badalona' (Spain), 「Unknown」, 2006.05.22.

⑤ 'Supreme Court of the Slovak Republic' (Slovakia), 「3 Obo 194/2007a」, 2008.11.12.

을 적시하였다.

법원은, 제66조에 의할 경우 당사자 간 운송조건에 관한 별단의 합의가 있었다면, 이는 양당사자의 특별한 합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매도인이 직접 물품을 선적하지 않고, 운송인에게 적절하게 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통지가 증명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이에 법원은, 본건은 양당사자의 특별한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최종 판시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합의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다) 평가

본 사건은 매수인과 합의된 내용으로서 목적물에 관한 상당한 주의의무의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당사자 간에 합의된 계약내용에 기하여 운송인에게 통지의무 내지 이에 따른 입증이 없었다는 이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이다. 한편, 본건을 통해 법원이 제35조(물품의 계약적합성)를 적용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²⁰⁾ 그럼에도 매도인에게 제3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명하고 있음은 당연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2. 운송조항부 계약과 위험의 이전(제67조)

(1) 운송조항부 계약과 위험이전의 요건과 제한

본조는 운송계약이 결부된 계약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통상, 위험은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된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본조에서는 매매계약이 운송계약을 수반하는지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 앞선 제31조 (a)는 운송계약이 수반되는 매매계약의 경우 매도인이 ‘최초 운송인’ (first carrier)에게 물품을 인도할 때에, 물품인도의

20) Harry M. Flechtner,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pp.345~375.

무가 완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수 있다.

차후의 운송에 관하여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운송계약을 수반하고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계약당사자는 매매계약에서 물품이 운송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컨대, 매도인이 물품을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정형거래조건과 같은 인도조건을 삽입시키는 것은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다.²¹⁾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 물품이 최초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에, 매수인에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이전한다. 한편, 본조 (1), 제2문에 기하여,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 위험은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이전된다. 또한 본조항 제3문에 의거, 매도인이 물품처분과 관련된 서류를 유보하는 것은 본조상 위험이전과 관련하여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 (2)는 물품이 계약물품으로 확정되는 것을 위험이전의 조건으로 두고 있다.²²⁾

(2) 판결례와 평가 : 운송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 위험이전 시기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제33조와 제67조가 병합된 판정례이다.²³⁾ 주요 골자는 당사자 간에 CIF로 합의하였으나, 인코텀즈에 의한다는 명문의 합의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또한 매도인은 물품대금지급 시까지 그 소유권을 유보하고 있는 경우 CIF하에서 위험부담이 이전된다고 판단되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사례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은 방사선기기를 목적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본 계약의 준거법은 독일법으로 합의되었다. 거래조건은 CIF로 특정하였는데,

21) Peter Schlechtriem, *op. cit.*, pp.505~508.

22) 심종석, 전계논문, 10~12면.

23) 'U.S. District Court, S.D.' (New York), 'Civ. 9344 (SHS)', 2002.

① 'Corte Costituzionale' (Italy), '465', 1992.

② 'Amtsgericht Duisburg' (Germany), '49 C 502/00', 2000.

③ 'Oberlandesgericht Schleswig' (Germany), '11 U 40/01', 2002.

그럼에도 불구하고 ICC가 정한 인코텀즈에 따른다는 취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계약내용에는 지정목적항에서의 통관 이후 매수인 영업소까지의 매도인이 운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본건 목적물은 일체에 손상이 없다는 것과 또한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것이 확인된 후 선적하는 것으로 하였는데, 최종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본건 기기의 중대한 손상이 발생되었다.

한편, 계약당사자는 물품대금이 완전히 지급될 때까지는 매도인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유보할 수 있다고 합의하고 있었다. 매수인은 본건 목적물에 대한 보험에 부보하였고, 이에 보험사는 본건 목적물의 보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을 대위해서 매도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나) 판정요지

법원은, 인코텀즈에 의한다는 취지의 합의가 없었더라도 CIF는 인코텀즈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으로, 이에 마땅히 본건은 인코텀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곧, 인코텀즈는 국제상거래에서 통상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을 제공하는 것에 있으므로, 본건도 응당 당사자가 합의한 당해 조건에 관해서는 인코텀즈에 준거해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소유권 유보에 관한 합의내용에 기하여, 법원은 인코텀즈에서와 마찬가지로 CISG에서는 위험부담의 이전은 소유권 귀속과 관계없이 독립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본건에 CIF와 다른 합의가 있었다고는 인정할 수 없고, 나아가 목적항에서 통관 이후 최종목적지까지 매수인이 운송하고,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특단의 합의로 취급할 수 있음에 따라, 이것이 CIF에서 위험부담의 이전시기에 대한 예외를 정한 특약이라고는 인정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다) 평가

제67조 (1)은 운송을 수반하는 매매계약에서 위험부담의 이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규정으로 당사자가 CISG와 다른 합의를 한 경우는 그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통상 무역거래에서는 ICC의 인코텀즈가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다. 그럼에도 인코텀즈와 다른 별단의 무역거래조건을 합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 사건에서의 시사점으로서 명확한 근거 내지 조건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3. 운송중인 물품의 위험이전시기(제68조)

(1) 운송중인 물품의 매매와 위험에 관한 요건과 제한

본조는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매각되는 경우 위험이전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곧, 본조상 운송 중 매각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상황이 적합하다면,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로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그러나, 매도인이 매매계약의 체결 시에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고 또한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에 속한다.

통상의 일반원칙에 의하면, 위험은 계약체결 시에 이전한다. 그러나, 적용가능한 경우에 물품이 운송인에게 이전될 때에 위험이 이전한다. 만약, 계약체결 시에 매도인이 물품의 손실이나 손해를 알고 있었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면서도 매수인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위험부담은 매도인에게 귀속된다.

계약당사자가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험이전은 계약체결 시에 이루어진다. 이 경우 운송수단은 관계가 없다. 그러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는 물품의 멸실 또는 훼손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위험이전 시에 물품에 하자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당사자는 매도인이므로 매도인은 이에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여야 한다.

한편,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될 수 있다. 이를테면, 매도인이 운송보험에 부보

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매수인이 계약체결 이전에도 피보험자로서의 지위를 담보할 수 있는 경우를 예시할 수 있다.²⁴⁾

(2) 판정례와 평가 : 운송중인 물품의 위험이전시기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물품매매의 합의가 구두로 이루어진 후에 비로소 매매계약서가 당사자 간에 교환되었을 때, 그 사이에 본선선적이 이루어진 경우 물품의 위험이전시기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⁵⁾ 곧, 매수인은 계약서에 서명하고, 이를 매도인에게 팩스로 송부하였고 매도인은 서명한 것을 매수인에게 재차 팩스로 송부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계약서 기재상의 오류를 발견하고 매도인과 재합의를 통해 당해 계약내용을 최종적으로 확인하였다.

매수인은 CIF조건으로 신용장을 개설하였으나, 본선은 환적항에서 장기체류로 본건 인도는 상당히 지체되었다. 이에 매도인은 본건 목적물을 제3자에게 매각처분하였고, 이에 매수인은 본건 손해배상청구를 위해 중재를 신청했다.

(나) 판정요지

중재판정부는, 제68조에 의거, 매수인이 본선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현저한 도착지연이 발생하였고, 이에 운송계약을 체결한 매도인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매도인은 CIF 국제관습을 수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본선의 내항증명서를 확인했다는 이유에서 매도인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나아가, 매도인은 자신의 의무를 다름없이 이행했다는 점에서 매수인에 의한 계약해제는 인정할 수 없고,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였다.

24) Ingeborg Schwenzer, *op. cit.*, pp.933~936 ;

25) 'CIFTAC'(China International Economic and Trade Arbitration Commission), 「Unknown」, 1997.

(다) 평가

제68조는 운송 중의 물품매매에 있어서 위험이전시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곧, 본조는 계약체결 시 위험이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교부되었을 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인수하였다는 사실이 상황을 통해 분명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운송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교부한 때로 소급하여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알고 있었거나 혹은 알았어야 할 물품의 멸실이나 훼손을 매수인에게 공개하지 않았다면, 매도인은 당해 물품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4. 기타 경우의 위험(제69조)

(1) 기타 위험의 이전

본조는 이상에서 다루지 않고 있는 그 밖의 위험이전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곧, 그 밖의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때 또는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하면,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이고 또한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위반을 범하게 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또한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인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된다. 아울러, 계약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당해 물품은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는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곧, 본조는 매도인이 직접 운송차량을 수배하여 물품을 운송하거나, 제3의 운송인을 통해 운송하는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통상 어떤 특정한 경우에 어느 조항이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를 기초로 합리적인 해석을 통한 사실의 문제로 귀결된다.²⁶⁾

매도인 영업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본조 (1)에 따르면, 매수인은 물품을 수령하는 시점에서 당해 위험을 부담한다. 달리,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인 때, 곧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지 않아 계약을 위반하는 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본조 (2)는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 그 밖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다. 이 경우 위험은 인도시기가 도래하고, 매수인이 물품이 자신의 임의처분에 놓인 것을 알았을 때 이전한다. 본조 (3)에 의하면, 계약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까지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취급된다.

(2) 판결례와 평가

(가) 논점과 사실관계

본 사건은 매수인의 회사가 도산한 경우 위험부담을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²⁷⁾ 매도인[미국]과 매수인[독일]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간에 계약의 목적물은 매수인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창고에 기탁하고, 이후 매수인의 지시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되어지는 과정을 거쳤다. 곧, 매도인은 창고에 기탁된 시점에서 창고송장을 매수인에게 발행하였고, 이후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고 물품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기탁기간 중의 창고사용료와 금리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다.

본건 원고는 매도인의 채권자로서, 매도인에 대한 채권담보를 위해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물품대금을 담보로 취득했으며, 이에 원고는 매수

26) Peter Huber and Alaster Mullis, *op. cit.*, pp.315~316.

27) 'Oberlandesgericht Hamm' (Germany), '19 U 127/97', 2007.

① 'Rechtbank van Koophandel, Ieper' (Belgium), 'A.R. 318/00', 2002.

② 'ICC Court of Arbitration' (France, Paris), '7197/1992', 1992.

③ 'Arrondissementsrechtbank Arnhem' (Netherlands), 'Unknown', 1997.

④ 'District of Colorado' (USA), 'Civil Action No. 09-cv-01763-WYD-KMT', 2010.

⑤ 'Oberlandesgericht Oldenburg' (Germany), '2 U 54/98', 1998.

인에 대해 본건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을 요청했고 매수인은 이를 승낙한 경위가 있다. 그 과정에서 창고회사의 도산으로 기탁되었던 목적물은 소실되어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

원고는 이 같은 상황하에서 매수인에 대해 창고송장을 발행하여 물품 대금지급을 요구했으나, 매수인이 이를 거부했던 관계로 이에 소를 제기했다. 제1심 법원은 매수인은 물품대금지급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건은 이에 불복한 원고 항소의 건이다.

(나) 판결요지

법원은, 우선 매도인은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았으며, 이는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정한 제30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고, 양당사자는 위험부담에 관한 명확한 합의의 내용을 두지 않고 있음에 따라,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제69조 (2)에 따라, 당해 위험은 인도시기가 도래하고 또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인 것을 매도인이 알았을 때 이전된다고 설시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본건에서 매수인은 창고에 물품이 기탁된 것을 통지하지 않았고, 원고 또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나아가, 매수인의 채권양도에 관한 승낙에 대해서, CISG에 의거, 독일 국제사법에 따라 오스트리아의 국내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할 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은 매수인에 의한 채무승인이라고는 취급할 수 없다고 최종 판시하였다.

(다) 평가

본건은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 합의는 막연하고 불충분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로부터 실무적용상의 유의점을 부각할 수 있다. 곧, 본건은 계약의 목적물이 계약내용에 따라 매수인에게 인도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위험부담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사실을 원고가 증명하지 못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는 사실로부

터 본건 판결의 의의를 구할 수 있다.

V. 요약 및 결론

본고에서는 CISG 제3편(물품의 매매), 제2장(매도인의 의무), 제1절(물품의 인도 및 서류교부)에 해당하는 제30조(매도인 의무의 총괄), 제31조(물품인도장소), 제32조(운송의 수배), 제33조(인도의 시기),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교부) 등에 관한 규정내용과 이에 연관되어 있는 제4장(위험의 이전)의 규정내용을 범위로 두고, 이에 당해 조문해석과 그 판결례 및 평가에 기한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물품의 인도와 서류교부의무

CISG는 매매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제30조 매도인의 의무규정 및 본조의 대칭적 연관규정으로서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제53조의 의무규정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당해 매매의 개념을 추론할 수 있다. 이 같은 시각에서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제30조는 그 해석과 적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규정이다. 곧, 매도인의 기본적인 의무는, 계약과 CISG에 의하여 요구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인도, 물품에 관련된 서류교부, 물품의 소유권을 이전시키는 것으로 집약할 수 있다.

당사자는 계약에 의한 배제 또는 변경에 관한 제6조에 의해 CISG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부터 그 효력을 변경할 수 있는데, 이에 당사자 간 합의의 내용은 국내법상의 형식요건에 관한 제12조를 제외하고 임의법규로서 CISG 각 조항에 우선하게 된다. 또한 당사자는 관행과 관습의 구속력에 관한 제9조에 따라 합의된 관습 및 당사자 사이에 확립된 관행에 구속된다. 이에 본고의 논제에 기하여 실무적으로 인코텀즈의 적용에 따른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곧 당사자가 계약내용에 비추어 이를 원용하는 것에 합의했을 경우에만 법적 구속력을 담보할 수 있다고 하는 시각에서 당

해 논점은 그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와 같은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인코텀즈는 국제무역에 있어 장기에 걸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사자 사이에 FOB나 CIF 등의 정형거래조건이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제9조에 기한 관습 또는 관행으로서 이로부터 CISG의 적용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제31조는 물품의 인도장소 및 의무의 내용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본조에 관련된 판결례는 재판관할에 관한 소송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본조는 운송수단의 수배에 관한 매도인의 의무내용을 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계약당사자가 정형거래조건을 원용하는 것에 합의했을 경우에는 그 적용상 본 조건이 우선 적용된다.

제33조는 인도시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규정이다. 곧, 매도인은 인도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기일에, 기일이 계약에 의하여 지정되어 있거나 또는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기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은 한, 그 기간 내의 어떠한 시기에, 또는 그 밖의 모든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상당한 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당한 기간은 그 구체적인 상황이나, 일반적인 사례와의 비교,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에 비추어 사실의 문제로 귀결된다.

제34조는 매도인의 서류교부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무역실무에서는 통상 인코텀즈에 준거해 당해 서류를 포함한 당사자의 의무를 명확하게 합의하는 것이 통례이며, 또한 대금결제에 신용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신용장 통일규칙(UCP)에 따라서 서류교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있다. 이 경우 당사자 간 별단의 합의나 관습 또는 관행은 본조에 우선하여 적용됨은 유의하여야 한다.

2. 위험의 이전

제66조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 이상,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더라도 매

수인은 대금지급의무를 면하지 못하며, 다만 그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기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요컨대, 매도인이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되기 전에 그 위험이 이전했음을 입증하는 경우 매수인은 당해 물품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반하여,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책임에 기인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 매수인은 그 멸실 또는 손상된 물품에 관하여 대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이러한 멸실 또는 손상이 매도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한 것이었음이 입증되면, 이는 불면책약관의 예외로서 취급된다.

제67조는 운송계약이 수반되는 매매계약에서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시기를 다루고 있는 규정이다. 위험이전은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물품의 소유권을 가지는지, 어느 당사자가 운송과 보험의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본조에 기하여 매도인이 지정장소에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의무가 없는 경우 물품이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에 위험이 이전되며, 매도인이 물품을 처분함과 관련된 서류를 유보하는 것은 본조상 위험이전에 관하여 그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

제68조는 물품이 운송과정에서 매각되는 경우 위험이전시기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본조의 내용은 운송 중에 매각되는 물품에 관한 위험은 계약체결 시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한편, 매도인이 계약체결 시에 물품이 이미 멸실 또는 손상되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했고 또한 이를 매수인에게 밝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멸실 또는 손상은 매도인의 위험에 속한다. 아울러, 당사자 간에 운송 중의 물품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험이전은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시에 이루어지며,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 운송계약상의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된 때에 위험이 이전될 수 있음은 실무적용상 적의 고려하여야 한다.

제69조는 기타 위험이전의 시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 내용은, 이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의 위험은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는 때 또는 매수인이 적시에 이를 수령하지 아니한다면,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고 또한 매수인이 인도를 수령하지 아니함으로써 계약위반을 범하게 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그러나,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수령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위험은 인도기일이 도래하고 또한 물품이 그 장소에서 매수인의 처분하에 놓인 사실을 매수인이 안 때에 이전된다. 아울러, 계약이 아직 특정되지 아니한 물품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물품이 계약에 명확히 특정되기 까지는 그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에 놓이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본조는 제67조와 제68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 김병학 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서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지역발전연구」, 제11집 제2호, 2006.
- 심종석,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상 위험의 이전에 관한 고찰”, 「국제상학」, 제27권 제3호, 2012.
- 양석완, “수하인(매수인)에 대한 위험이전의 문제점 검토”, 「해법학회지」, 제31권 제2호, 한국해법학회, 2009.
- 윤남순,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 협약상의 위험이전”, 「경영법률」, 제18권 제2집, 한국경영법률학회, 2008.
- 전순환, “Incoterms 2010의 위험이전조항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3권 제2호, 한국관세학회, 2012.
- Franco Ferrari, “Burden of Proof under the CISG,”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Nov. 5, 2005.
- Harry M. Flechtner, *et al.*, *Drafting Contracts under the CISG*, Oxford Univ. Press, 2008.
- Henry Mather, “Choice of Law for International Sales Issues Not Resolved by the CISG,” *Pace Law*, Pace Law School Institute of International Commercial Law, Jan. 17, 2003.
- Ingeborg Schwenzer,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3rd ed., Oxford Univ. Press, 2007.

Ingerborg Schwenzer and Christiana Fountoulakis, *International Sales Law*, Cavendish Publishing, 2007.

Joseph Lookofsky, *Understanding the CISG*, Wolters Kluwer, 2008.

Peter Schlechtriem, *Commentary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Oxford Univ. Press, 1998.

Peter Huber, Alastair Mullis, *The CISG*, European Law Publishers, 2007.

UNCITRAL, *Digest of Case Law on the UN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United Nations Publication (Printed in Austria), 2008.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Spain), 「JUR 2002\114334」, 2002.02.12.

‘Audiencia Provincial de Barcelona’ (Spain), 「Unknown」, 1997.06.20.

‘Audiencia Provincial de Murcia’ (Spain), 「313/2001」, 2001.06.18.

‘Bezirksgericht der Saane’ (Switzerland), 「T.171/95」, 1997.02.20.

‘Commercial Court of Donetsk Region’ (Ukraine), 「44/69」, 2007.04.13.

‘Corte Suprema di Cassazione, Sez. Un.’ (Italy), 「21191」, 2009.10.05.

‘Cour de Justice de Genève’ (Swiss), 「C/27176/2001」, 2006.01.20.

‘Court d’Appel de Versailles’ (France), 「Unknown」, 2002.11.28.

‘Handelsgericht des Kantons Zürich’ (Swiss), 「HG 970238.1」, 1999.02.10.

‘Handelsgericht Zürich’ (Switzerland), 「HG 930634」, 1998.11.30.

‘Hof van Beroep, Antwerpen’ (Belgium), 「2002/AR/2087」, 2006.04.24.

‘Hof van Beroep, Antwerpen’ (Belgium), 「2006/AR/384」, 2007.01.22.

‘Højesteret (Supreme Court)’ (Denmark), 「569/1997」, 2001.02.15.

‘ICC Court of Arbitration’ (Paris), 「8611/HV/JK」, 1997.01.23.

‘Intermediate Peoples’ Court Economic Chamber’ (China), 「102」, 1998.02.15.

‘Juzgado de Primer Instancia, n. 3 de Badalona’ (Spain), 「Unknown」, 2006.05.22.

‘Landgericht Berlin’ (Germany), 「88 U 89/02」, 2007.03.21.

‘Landgericht Neubrandenburg’ (Germany), 「10 O 74/04」, 2005.08.03.

‘Oberlandesgericht Naumburg’ (Germany), 「9 U 146/98」, 1999.04.27.

‘Oberster Gerichtshof’ (Austria), 「2 Ob 221 / 98h」, 1998.09.10.

‘Schweizerisches Bundesgericht’ (Switzerland), 「4A 131/2009」, 2009.06.26.

‘Supreme Court of Poland’ , 「V CK 293/05」, 2005.11.10.

‘Supreme Court of the Slovak Republic’ (Slovakia), 「3 Obo 194/2007a」, 2008.11.12.

‘Tribunal Cantonal de Sion’ (Switzerland), 「C1 97 288」, 1998.06.29.

‘Tribunal de Grande Instance de Colmar’ (France), 「Unknown」, 1997.12.18.

‘Tribunale di Forlì ’ (Italy), 「2280/2007」, 2008.12.11.

‘U.S. District Court, Southern District of New York’ (USA), 「12 Civ. 3904」,
2010.02.10.